

일제의 한국병합과 ‘한국황실처분’의 정략적 함의 *

윤 대 원 **

-
- | | |
|-----------------------------|-----------------------|
| 1. 머리말 | 4. 왕 책립 및 황실령의 정략적 함의 |
| 2. 일제의 국호 및 ‘한국황실처분’ 방침 | 5. 맺음말 |
| 3. 일제의 국호 및 ‘한국황실처분’ 방침의 변경 | |
-

초록: 이 연구는 병합 후 한국의 국가호칭 및 국왕호칭 문제를 두고 일어난 통감부와 일본 정부 사이의 갈등의 배경과 그 해결이 갖는 정략적 함의를 밝히는데 있다. 일본은 1910년 7월 8일 내각회의에서 병합 후 한국의 국호를 조선이라 하고 한국황실을 공족으로 삼고 황족의 예로 대우하기로 했다. 이 결의는 8월 16일 데라우치와 이완용의 비밀 회담에서 병합 설득의 명분을 내세운 이완용의 요구에 의해 국호는 조선으로, 한국황실은 왕공족으로 칭하기로 했다. 일본이 자신들의 방침을 바꾸면서까지 이완용의 제의를 받아들인 것은 쉽게 다가온 병합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병합 후 한국황제를 왕으로 임명하는 왕 책립의 형식 및 칙사의 성격 그리고 이왕가의 감독권 문제로 통감부와 궁내성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데라우치는 병합에 대한 회유와 한국황실의 정치 활동 단절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왕 책립의 예우를 강조했다. 그 배경에는 병합 후 조선총독이 이왕기를 직접 감독하려는 데라우치의 정략적 함의가 있었다. 이 때문에 병합 후 한국은 식민지이면서도 독립을 표상하는 국호와 왕실이 존재하는 독특한 식민지가 됐다.

핵심어 : 한국황실, 국호, 왕공족, 칙사, 이왕가 감독권, 황실령, 대륙침략정책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7).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1. 머리말

대한제국의 한국황실은 ‘한국황제 등과 그 후예에게 각기 지위에 상당한 존칭·위엄과 명예를 향유케 한다’는 등의 병합늑약 제3·4조에 따라 병합 후 일본 황족의 예를 받는 새로운 王公族이 되어 일본의 신분제에 편입되었다. 이것은 한국에 앞서 일본 귀족인 華族에 편입된 오키나와 왕족, 일반 신민에 편입된 사할린, 타이완 등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그만큼 일제가 병합 후 식민 통치와 관련하여 한국황실처분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반증이다.

한국황실처분 문제는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학계의 관심이 주로 병합의 불법성 문제에 집중된 측면도 있지만 병합에 대한 한국황실의 책임론도 연구 부진에 한 몫 했다. 최근 일제 강점기 李王家와 그 업무를 담당했던 이왕직제도와 운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한국황실처분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단지 이왕가 창설의 전단계로서 관심을 가질 뿐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 실정이다.¹⁾ 반면 일본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일본 황실 연구의 일환으로 일제 강점기 왕공족의 법적 지위, 이왕직계보 등을 연구해 왔으나 주로 일본의 시각에서 일제가 한국을 병합하면서 한국황실을 우대했다는 등 긍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일제의 한국병합 과정을 추적하면서 병합 당시 이 문제가 일본이 구상한 병합 후 일본 제국과 한국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다거나,²⁾ 일본정치사의 관점에서 왕공족이 일제에 대한 조선의 독립성을 표상하는 존재이자 일제의 조선통치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³⁾

병합을 실제 주도했던 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가 병합 후 한국의 국가호칭 및 국왕호칭 문제를 ‘조선통치상의 최대 요건’이라고 할 정도로 이 문제는

1) 이윤상, 2007 「일제하 ‘조선왕실’의 지위와 이왕직의 기능」, 『한국문화』 40; 李王茂, 2016 「대한제국 황실의 분해와 王公族의 탄생」, 『한국사학보』 64.

2) 오가사와라 히로유키(최덕수·박한민 옮김), 2012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병합구상과 조선 사회』, 열린책들, 432-439면.

3) 新城道彦, 2011 「第一章 韓國併合と王公族の創設」, 『天皇の韓國併合-王公族の創設と帝國の葛藤』, 法政大學出版局.

병합 이후 식민 통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였다. 병합 후 한국의 '국가호칭 및 국왕호칭' 문제가 1910년 8월 29일 병합 공포 직전까지 통감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쟁점이 됐고, 그 쟁점은 병합 후 '왕 책립' 및 '이왕가의 감독권' 문제를 두고 양 측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이 갈등은 병합 후 일본 제국과 식민지 조선의 관계에 대한 양측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고, 그 차이는 병합 후 한국의 식민 통치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됐다.

본고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병합 후 한국의 '국가호칭 및 국왕호칭' 문제에 내포된 일제의 정략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제가 한국병합을 준비하면서 한국황실처분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어 이 방침이 실제 병합늑약 체결 과정에서 변화, 확정되는 과정 그리고 그 결정을 실행할 왕 책립과 황실령을 두고 벌어진 통감부와 본국의 갈등에 내포된 정략적 함의를 알아보자 한다.

2. 일제의 국호 및 한국황실 처분 방침

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합하기 직전인 1910년 6월 하순 도쿄의 수상 관저에 비밀리에 설치한 병합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통감부 외무국장 고마츠 미도리(小松祿)는 한국병합을 준비하면서 “가장 긴급히 고려를 요하는 문제는 한국황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였다고 했다.⁴⁾ 통감 데라우치는 병합 공포 하루 전인 8월 28일 가즈라 다로(桂太郎) 수상에게 한국황실처분 문제를 “조선통치상의 최대 요건”이라고 했다.⁵⁾ 이처럼 일제는 한국황실처분 문제를 병합 실현은 물론 이후 식민 통치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다. 왜냐하면 주권자인 한국황제의 태

4) 小松祿, 1920 『朝鮮併合之裏面』, 中外新論社, 88면.

5)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 Ref.A03023677100 公文別錄・「朝鮮王族及公族支配ニ關スル皇室令發布件ニ對シ」(1910.08.28.) 韓國併合ニ關スル書類・明治四十二年～明治四十三年 第一卷(이하 『韓國併合ニ關スル書類』).

도가 일제가 희망했던 ‘합의적 조약’을 통한 병합 실현에 관건적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병합 후 한국을 일본 제국에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한 문제와 강력하게 관련”됐기 때문이다.⁶⁾

그럼 일제가 병합을 준비하면서 병합 후 한국의 국호 및 한국황실처분 방침을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 보자.

일본이 한국병합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09년 3월 이후였다. 당시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외무대신은 외무성 정무국장 구라치 데스키츠(倉知鐵吉)에게 향후 대한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뒤 이를 바탕으로 대한방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후 고무라는 구라치가 만든 방침을 수정하여⁷⁾ ‘한국을 병합하여 이를 제국 관도의 일부’로 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한국병합을 실행’한다는 「대한정책방침 및 시설대강」이란 대한방침을 만들었다.⁸⁾ 고무라는 3월 30일 이 안을 가츠라 수상에게 보여준 뒤⁹⁾ 4월 10일 고무라, 가츠라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만나 이 방침에 대한 밀담을 나누고 합의를 보았다.

비밀리에 논의된 이 방침은 1909년 7월 6일 열린 내각회의에 제출하여 결의하고 이날 바로 일본 왕의 재가를 받았다.¹⁰⁾ 이로써 한국병합이 일본 정부의 공식 방침으로 확정되었다. 이 날 결의된 내용은 지난 4월 10일 가츠라, 고무라, 이토가 합의한 것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즉 적당한 시기에 병합을 단행하되 그 시기가 도래하기까지 한국에서의 실력을 증진하여内外에 대해 경쟁할 수 없는 세력을 수립하는데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침에서 “한국을 병합하여 이를 제국 관도의 일부”로 삼는다고 한 것은 대한제국의 완전한 폐멸을 뜻한다. 때문에 일제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병합 시기가 도래할 때를 대비한 계획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무라는 다시 구라치에게 ‘적당한 시기’의 도래에 대비하여 병합

6) 오가사와라 히로유키, 앞의 책, 432면.

7) 倉知鐵吉氏述, 1939『韓國併合の經緯』, 1-2면.

8) 小松祿, 앞의 책, 86-87면.

9) 日本外務省編, 1966『小村外交史』, 原書房, 834면(이하『小村外交史』).

10) 日本外務省編, 1965『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原書房, 176면.

단행의 순서, 방법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략히 이야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하여 구라치가 작성한 것이 「대한세복요강기 초안」이었다.¹¹⁾ 고무라는 이 기초안을 수정하여 '한국병합의 선포', '한국황실의 처분', '한국장래의 통치', '대외관계' 등에 걸친 제 사항을 상세히 갖춘 의견서를 작성했다. 이때 처음으로 한국황실처분안이 마련됐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²⁾

제2 한국황실의 처분

- (1) 한국의 병합과 동시에 한국황실로 하여금 명실공히 전연 정권에 관계치 못하게 함으로써 한인 異圖의 근본을 단절시킬 것.
- (2) 한국황제는 폐위하고 현 황제를 大公殿下로 칭할 것.
- (3) 태황제, 현 황태자 및 의친왕은 公殿下로 칭할 것.
- (4) 대공전하, 공전하 및 그 일문은 도쿄에 이거시킬 것.
- (5) 대공전하, 공전하 및 그 일문에 대해서는 우리 황실 및 화족의 예를 참작하여 특별한 예우 및 특전을 부여할 것.
- (6) 대공가 및 공가에 대해서는 경비를 국고에서 일정의 연액을 지급할 것, 단 대공가 및 공가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궁내대신이 관리할 것.
- (7) 병합실행 때 한국황실에 속한 재산으로서 황실 사유의 성질을 가진 것은 대공가 및 공가의 소유로 하고 사유의 성질이 아닌 것은 제국정부의 소유로 이전할 것.

고무라가 마련한 한국황실처분안은 한마디로 병합과 함께 한국황실을 폐지하고 현 황제를 대공전하로, 태황제 즉 고종 및 황태자 그리고 황족인 의친왕을 공전하로 칭하고, 일본의 신분제에 편입하여 황족 내지 화족의 예로 예우하고, 순종을 비롯한 황족을 도쿄로 옮기며 이들에 대한 모든 사무를 궁내성이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병합 후 한국 정권과 황실을 완전히 단절시켜 한국황실이 독립운동의 근거가 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¹³⁾

11) 倉知鐵吉氏述, 앞의 책, 6면.

12) 『小村外交史』, 840-842면.

13) 고무라가 마련한 한국병합의 순서, 방법 등 병합방침 세목에 관한 의견서는 7월 하순 가즈라에게 제출되었고, 그해 가을 각의에 제출됐지만 결의는 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 의견서가 이후 내각에서 정식 결의됐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윤대원, 2015 「일제의 한국병합 방법과 식민 통치 방침」, 『한국문화』 70, 301-306면 참조.

일제는 1910년 5월 30일 현직 육군대신인 데라우치를 제3대 통감으로 임명하고 즉시 병합을 서둘렀다. 사실 데라우치는 그해 3월 가츠라로부터 병합 단행을 조건으로 통감 제의를 받았다. 이때부터 그는 정부와 민간의 주요 인물들과 의견 교환을 나누고 5월에는 통감부 외무국장 고마쓰 등을 도쿄로 불러들여 병합을 준비해 왔다.¹⁴⁾ 한편 일본 정부는 6월 3일 각의에서 실제 병합이 이루어질 경우 당장 취해야 할 기본 방침으로 13개 항의 ‘한국병합실행에 관한 방침’을 결의했다.¹⁵⁾ 이 방침에 따라 병합에 필요한 법령, 조약 등을 책임지고 준비해 갈 기구로 통감부와 일본 내각 관리로 구성된 병합준비위원회를 수상 관저에 비밀리에 설치하고 6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다.¹⁶⁾

병합준비위원회는 7월 7일 모든 활동을 마치고 국호, 한국황실 및 공신의 처분 등 병합에 필요한 법령안을 마련하여 내각에 제출했다. 내각은 7월 8일 이들 법령안을 약간 수정하여 가결했다.¹⁷⁾ 이날 내각에서 가결한 ‘한국병합 시 처리법안 대요’는 일제가 병합 단행과 동시에 선포할 22개 항의 법령들이다. 이 가운데 제1항과 제16항이 병합 후 한국의 국호와 황실처분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⁸⁾

제1 國稱의 전(勅令)

한국을 改稱하여 조선으로 할 것.

....

제16 한국의 황실 및 공신의 처분

- 한국황실인 李家는 세습하고 그 정통을 太公, 그 世嗣를 公으로 하고 현 태황제는 일대에 한해 특별히 태공의 존칭을 주고 모두 전하라고 칭함.
태황제, 현 황제, 황태자에 대해 1년 150만 원을 지급할 것. 단 장래 이태공가(정통)에게 지급은 정액으로 한다.

14) 국사편찬위원회, 1998 『統監府文書』 2, 267면.

15) 日本外務省 編纂, 1961 『日本外交文書』 제43권 제1책, 巖南堂書店, 660면(이하『日本外交文書』 제43권 제1책).

16) 小松祿, 앞의 책, 87-89면.

17) 『小村外交史』, 846면.

18) 「韓國併合ノ際ニ於ケル處理法案大要 閣議決定(1910.7.8.)」, 『韓國併合ニ關スル書類』.

- 의친왕 이하 이조의 황족에 대해서는 그 班位에 따라 황족으로 대우하고 또 公侯伯(조선귀족)을 수여하고 상당한 공채증서를 하사할 것.

이에 따르면 병합 후 국호는 조선으로 하고, 한국황실에 대해서는 순종을 태공으로, 황태자를 공으로 그리고 태황제인 고종은 일대에 한해 태공으로 칭하고 이들에게 1년에 150만 원을 지급하며 황족의 예로 대우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1909년 7월 고무라의 의견서에 있던 한국황실의 처분 방침과 비교하면, 한국황실을 공족으로 편입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대신 한국황족을 도쿄로 이거시킨다는 방침이 삭제되고, 황실 경비로 1년에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런데 7월 8일 내각회의에서 결의한 「한국병합 시 처리법안 대요」에는 “각案 내용에 대해서는 실행할 때 다소 취사 수정을 요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考虑한다.”라는 단서를 두었다.¹⁹⁾ 이 조항은 곧 데라우치가 한국에 통감으로 부임한 뒤 한국정부와 병합을 협상할 때 현지 사정이나 한국 측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제는 병합 후 한국을 조선으로 칭하고 한국황실을 폐지하는 대신 이들을 황족의 예에 준하는 공족으로 삼아 일본의 신분제에 새로이 편입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이 방침은 병합 과정에서 한국의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1910년 7월 데라우치는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제3대 통감으로 한국에 부임했고, 방침의 관철 내지 변경 여부는 이후 병합 협상에 달려 있었다.

3. 일제의 국호 및 한국황실처분 방침의 변화

1) 지역명으로서의 '조선'

일제는 병합과 동시에 공포할 칙령 가운데 '제1 국칭의 건'에서 "한국을 개칭하

19) 위와 같음.

여 조선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일제가 ‘한국을 병합하여 제국 관도의 일부’로 삼는다고 하여 나라 자체가 소멸하게 됐는데 왜 ‘국호’라는 호칭을 쓰고 ‘조선’이라고 했을까 의문이지 않을 수 없다.

병합 후 한국의 국호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된 것은 1910년 6월 하순 조직된 병합준비위원회에서였다. 병합준비위원회에서 병합 후 한국의 호칭을 논의할 때 “한국을 병합하여 제국의 일부로 삼는 이상 그 명칭을 南海島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타이완의 옛 명칭을 존속시킨 예에 따라 조선으로 하기로 결정했다.²⁰⁾ 병합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된 국호 조선은 7월 8일 내각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됐다. 당시 체신대신 겸 척식국 부총재였던 고토 신페이(後藤新平)는 “한인의 역사적 심리를 고려하여 高麗로 칭하자”고 제의했으나 가쓰라, 데라우치 등이 반대하여 최종 국호를 조선으로 하기로 결정했다.²¹⁾

이렇게 하여 결정된 국호가 다시 문제가 된 것은 8월 16일 데라우치와 이완용이 가진 비밀회담에서였다. 당시 한국은 ‘시국문제’라는 이름으로 병합 소문이 무성하여 정치적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었다. 일본과 통감부가 병합 또는 합방 등의 용어 사용과 이에 관한 보도를 철저히 금지했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을 부채질했다. 더구나 7월 23일 제3대 통감으로 부임한 데라우치마저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는 일체 행동을 하지 않고 특히 ‘시국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어 이완용 등 한국정부를 매우 당황하게 했다.²²⁾ 병합에 관한 일본의 속내를 알 수 없어 조급해진 이완용은 8월 5일과 8일 자신의 개인 비서인 이인직을 통감 관저로 두 차례 비밀리에 보내어 고마즈로부터 일본의 병합 구상을 듣고 병합에 협조하겠다는 자신의 뜻을 전했다.²³⁾ 이렇게 하여 8월 16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 첫 회담

20) 小松祿, 1927 『明治史實外交秘話』, 中外商業申報社, 437면.

21) 『小村外交史』, 846면.

22) 3대 통감 부임 이후 데라우치의 행동은 치밀하게 짜여진 계략이었고 이런 계략에 말려든 이완용에 대해 당시 통감부 외무국장 고마즈는 ‘꼭두각시 놀이’로 비유했는데(小松祿, 1920 『朝鮮併合之裏面』, 中外新論社, 108면)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윤대원, 2011 『데라우치 마사다케 통감의 강제병합공작과 ‘한국병합’의 불법성』, 소명출판, 124-130면 참조.

23) 小松祿, 앞의 책, 125-138면.

이 이루어졌다. 사실 이날 만남은 정식 회담이라기보다는 이완용이 개인비서 이인직을 통해 들은 일본의 병합 구상을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정부에 병합협상을 정식으로 접수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완용은 이날 농상공부대신 조중옹을 데리고 통감관저로 가면서 당시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을 위문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변의 눈을 속였던 것이다.²⁴⁾

이날 이완용은 데라우치로부터 병합 후 한국황실 대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일본의 대체적인 병합 방침을 적시한 각서를 읽은 후 병합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이완용은 한국이 청국에 예속됐던 시대에도 국왕의 칭호가 존재했던 역사가 있으므로 병합 후 한국황실에 왕호를 부여해 종실의 제사를 영구히 존속시킨다면 병합에 따른 일반 인심을 완화하는데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라며 “국호는 전과 같이 한국으로 하며 황제에게는 왕의 존칭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의했다.²⁵⁾ 이에 대해 데라우치는 “무릇 일반적인 국제관계에서 본다면 이미 병합이 실행된 후 왕위를 존속시킬 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를 존속하게 한다면 오히려 장래에 화근을 남겨 이씨의 종실을 영구 안전치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완용을 설득했다.²⁶⁾

그러나 이완용은 데라우치에게 이 자리에서 바로 응낙하기 곤란하다며 이 문제를 동료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다시 협의하자고 했다. 이날 오후 9시 조중옹이 이완용과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데라우치를 찾아왔다. 조중옹은 병합에는 “대체로 이의가 없으나” “고래의 역사에 비추어” 국호와 왕칭만은 그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현저히 한국 상하의 감정을 해쳐 어지럽고 시끄러운 일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이 두 가지를 서로 합의하지 못하면 타협의 방도가 없다는 이완용의 뜻을 데라우치에게 전달했다.²⁷⁾

24) 「李首相의 水害慰問」, 『大韓每日申報』, 1910.8.17.

25) 李鍾學 編著, 2000 「朝鮮總督報告 韓國併合始末」, 『1910年 韓國強占資料』, 史芸研究所, 27-29면(이하 『1910年 韓國強占資料』).

26) 「朝鮮總督報告 韓國併合始末」, 『1910年 韓國強占資料』, 29면.

병합에 이미 동의한 이완용이 국호 및 왕칭 유지를 제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지난 8월 4일 이완용이 이인직을 통감관저에 보내 전한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완용은 자신이 병합의 ‘난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왕실의 대우’라고 했다. 왜냐하면 “현 황제가 스스로 물러날 뜻을 말하지 않는데 신하의 신분으로 수천년래의 사직을 일시에 단절하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²⁸⁾ 즉 이 완용은 자신은 병합에 동의하지만 일본이 제의한 방안으로는 순종과 다른 대신들을 설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저항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때문에 그에게는 병합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다. 그는 그 명분을 ‘한국이 청국에 예속됐던 시대’ 즉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책봉관계에서 찾았다. 다시 말하면 이완용은 일본에의 병합을 전통적인 책봉관계로 치환하여 병합 설득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다. 때문에 이완용에게는 비록 형식적일지라도 병합 후 국호와 왕칭의 유지가 중요했던 것이다.

한편 이완용의 최후통첩을 전달받은 데라우치는 조중옹에게 “국호는 제국정부에서도 이를 조선이라 고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피아간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고치고, 황제를 이왕전하, 태황제를 태왕전하, 황태자를 왕세자전하라 칭하도록’ 본국에 품의하겠다고 약속했다.²⁹⁾ 국왕 호칭에 대해 데라우치가 “다른 교섭 사항을 원활히 진행하고 가급적 온화하게 본건(병합-필자)을 매듭짓기 위해 저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했듯이³⁰⁾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병합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완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완용은 조중옹을 통해 데라우치의 약속을 전달받고 17일 “국호 및 왕칭에 관한 자기의 주장이 제국정부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각의를 통일하는데 진력하겠다.”라고 데라우치에게 통보했다. 다음날 데라우치는 본국에 품의하여 재가를 얻었다고 이완용에게 전달했다.³¹⁾ 이로써 7월 8일

27) 『朝鮮總督報告 韓國併合始末』, 『1910年 韓國強占資料』, 30면.

28) 小松祿, 앞의 책, 139면.

29) 『朝鮮總督報告 韓國併合始末』, 『1910年 韓國強占資料』, 31면.

30) 『日本外交文書』 제43권 제1책, 678면.

일본 내각에서 결의한 '제1 국정의 건' 및 '제16 한국의 황실 및 공신 처분'이 이완용의 제의에 의해 변경됐으나 국호는 원래 방침대로 조선으로 칭하기로 했다.

그럼 일본은 왜 병합 후 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개칭하려 했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병합준비위원회 논의에서 "타이완의 옛 명칭을 존속시킨 예에 따라 조선으로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고마츠의 주장대로 한다면 국호는 조선이 아니라 한국이 돼야 한다. 그런데도 데라우치가 국호를 조선이라고 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고종이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유였다. 즉 고종이 대외적 자주독립, 직접적으로는 대청독립을 위해 조선이란 호칭을 폐지하고 대한을 새로운 국호로 삼은 것인데 일본은 국호 조선을 사용함으로써 대외적 종속성을 환기시키고 병합 후 조선에 열등한 위치를 부식하려 한 것이다.³²⁾

그런데 국호와 관련한 또 하나의 의문은 왜 일본은 병합 후 일본 제국의 영토가 될 식민지 조선에 '국호'라는 명칭을 사용했는가이다. 한국은 일제의 병합에 의해 일본 제국 영토에 편입될 식민지가 될 터인데 그 식민지에 '국호'를 사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왜냐하면 병합 후 한국은 일본 제국 판도의 일부가 되어 나라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 국호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이 사용한 '국호'의 실제 의미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8월 17일 데라우치가 가즈라에게 보낸 전보다. 이 전보는 데라우치가 하루 전날 조중옹에게 약속했듯이 국호 및 왕칭에 대해 본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보낸 것인데 그 가운데 국호와 관련된 내용이다.³³⁾

지난날 통감부 촉탁이 휴대해 올린 '舊韓國의 境土는 이를 조선으로 칭한다'라고 꽤 있으나 위는 한인 측의 의향도 참작할 사정이 있어 이 안을 다음과 같은 자구로 고쳐서 조약공포와 동시에 공포하여 달라. '한국의 국호는 이를 고쳐 이제부터 조선이라 칭한다'.(진한 글씨체는 필자)

31) 주) 29와 같음.

32) 오가사와라 히로유키 지음, 앞의 책, 438-439면.

33) 「데라우치 통감 → 가즈라 수상(1919.8.17), 『1910年 韓國強占資料』, 104면.

위 전보에서 ‘지난날 통감부 촉탁이 휴대해 올린’ 것이란 통감부에서 7월 8일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제법령을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수정하여 8월 7일 나가오(長尾) 촉탁에게 법령안을 휴대시켜 도쿄로 보낸 것을 말한다.³⁴⁾ 위 전문은 수정한 제법령 가운데 국호에 관한 칙령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7월 8일 내각에서 결의한 칙령 즉 ‘제1 국칭의 건’(‘한국을 개칭하여 조선으로 할 것’)을, 데라우치가 한국에 부임한 후 ‘舊韓國의 境土는 이를 조선으로 칭한다.’라고 수정하여 본국에 승인을 요청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애초 ‘한국’이 ‘舊韓國의 境土’로 수정된 부분이다. 이것은 데라우치나 일본이 한국 또는 조선을 국호와 같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지리적 위치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이란 국호가 아니라 병합 후 제국 영토가 될 식민지 조선의 지역명인 것이다. 그런데 데라우치는 병합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완용의 제의를 받아들여 ‘舊韓國의 境土’를 다시 ‘한국’으로 수정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조선이 지역명이 아닌 ‘국호’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제가 부득이 조선이란 국호를 사용했지만 식민지 조선의 위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국호 조선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는 지역명이었다.

2) ‘공족’에서 ‘왕공족’으로

8월 16일 데라우치와의 비밀 회담에서 이완용이 제의한 국호 문제에 이어 왕칭 유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는지 보자.

8월 16일 데라우치가 이완용을 만나기 직전 본국에서 궁내성에서 작성한 ‘태공 및 세사에 관한 조서안’을 보내왔다.³⁵⁾ 이 조서안은 7월 8일 내각회의에서 결의한

34) 「고다마 비서관 → 시바타 서기관장(1910.8.9)」, 『1910年 韓國強占資料』, 98면. 8월 7일 서울을 출발한 나가오 촉탁이 당시 일본의 큰 수해로 교통사정이 온전치 못해 예정대로 도쿄에 도착할 수 없게 되자 통감부와 본국 정부는 급히 전보를 이용하여 병합 후 공포될 법령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했다.

35) 궁내성이 작성한 ‘태공 및 세사에 관한 조서안’은 “현 황제는 태공으로 하고 세습한다. 세자는 공으로 하고 태황제는 여전히 태공이라 칭하며 각 妃는 태공비 또는 공비라 하고 모두 황족의 예로 대우하며 전하라 칭하게 한다.”였다(「시바타 서기관장 → 데라우치 통

'제16 한국의 황실 및 공신 처분'을 정리한 것으로 한마디로 한국황실을 공족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이 날 밤 데라우치는 이완용이 보낸 조중옹을 만나 한국의 국호와 왕칭를 수정하여 일본정부에 품의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였다. 때문에 궁내성이 작성한 조서안이 수정되어야 했다. 8월 17일 데라우치는 시바타 가몬(柴田家門) 서기관장에게 궁내성의 조서안에 대해 한국 측이 희망하는 대로 대공을 왕으로 수정하도록 전보했다.³⁶⁾ 이튿날 데라우치는 '현 황제를 창덕궁 이왕전하, 태황제를 덕수궁 태왕전하, 또 황태자를 왕세자전하로 하는 건과 한국 국호를 고쳐서 조선이라 칭하는 건 모두 이의 없다'는 가츠라의 전보를 받았다.³⁷⁾

이에 따라 데라우치는 궁내성에서 작성한 '태공 및 세사에 관한 조서안' 가운데 "太公으로 하고'를 '李王으로 하고 昌德宮으로 칭하게'로 고치고, '장래의 세자를 公으로 함'을 '世子를 왕세자로 하고'로 고치고, '태황제는 여전히 태왕으로 하고 덕수궁으로 칭하고 각기의 儂匹을 왕비, 태왕비 또는 왕세자비로 하고'로 고칠"것을 요구했다.³⁸⁾ 일본정부에서는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8월 22일 전문으로 보내면서 "이 이상 수정의 여지가 없"다고 통보했다.³⁹⁾

집은 天壤의 무궁함과 큰 기틀을 넓히고, 국가의 비상한 禮數를 갖추고자 전 한국황제를 책립하여 왕(李王이 아님)으로 하고 창덕궁이라 칭하며 뒤를 이어 隆錫을 세습시켜서 그 종사를 받들게 하고, 황태자와 장래의 세사를 왕세자로 하며 태황제를 태왕으로 하여 덕수궁이라 칭케 한다. 각각 배필을 왕비 태왕비 또는 왕세자비라 하고 아울러 황족의 예로서 하고 특히 전하하는 경칭을 사용하여 世家가 率循의 도를 따르라(이하 궁내성안과 같음)

그런데 최종안이라고 본국에서 보내온 조서안이 다시 문제가 됐다. 수정된 조서안에는 '전 한국황제를 책립하여 왕으로' 한다고 하면서 "단 팔호 안은 모두 문자

감(1910.8.16)』, 『1910年 韓國強占資料集』, 55-57면).

36) 「데라우치 통감 → 시바타 서기관장(1910.8.17)」, 『1910年 韓國強占資料』, 104-105면.

37) 「가츠라 총리대신 → 데라우치 통감(1910.8.18)」, 『1910年 韓國強占資料』, 60면.

38) 「데라우치 통감 → 시바타 서기관장(1910.8.20)」, 『1910年 韓國強占資料』, 108면.

39) 「시바타 서기관장 → 고다마 비서관(1910.8.22)」, 『1910年 韓國強占資料』, 67면.

에 대한 주의”라는 단서를 달아 통감부에서 요구한 ‘이왕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비서관이 본국에서 보낸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다고 하면서도 “王이란 문자를 쓸 때에는 종래부터 써온 조선왕이란 칭호를 쓰고자 하는 희망을 제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이왕이란 문자를 미리 사용하여 이를 막고자 한 것이었다고 하며 ‘이왕’이 아닌 왕으로 칭한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⁴⁰⁾ 이에 대해 시바타는 자신도 고다마의 생각과 같다고 하면서도 “문장 상으로 주장하기 곤란하여 궁내성과 협의”한 것이라며 확정된 안으로 양해하고 통감에게 전달하기를 요청했다.⁴¹⁾ 여기서 시바타가 말한 문장 상의 곤란함이란 일본의 姓은 일본 왕이 신민에게 하사한 것이고 황족은 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황족의 예를 받는 한국황실의 성에 해당하는 ‘李’를 王 앞에 붙이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⁴²⁾

그러나 데라우치는 23일과 24일 양일간 가츠라 수상에게 궁내성의 수정안을 다시 상주하여 이왕으로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데라우치가 이왕을 고집한 이유는 이미 병합늑약이 체결되던 8월 22일 아침 민병석 궁내부대신과 윤덕영 시종원경에게 이왕가에 대해서는 일본 황족과 같은 예우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한국황제가 시국해결에 힘쓴 이상) 그 종실에 대해서는 마음 놓고 길이길이 이를 존속시키고 또한 이에 상당한 예우를 내리심은 실로 우리 지존의 至仁至德한 넓은 도량을 일반에게 표시하는 바”이고 또한 “한국민을 그 은택에 감읍시키는 근본 까닭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⁴³⁾ 뿐만 아니라 특히 이왕을 강조하는 것은 “단지 왕이란 칭호를 쓸 때에는 종래대로 조선왕이라 칭하고 싶은 희망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왕이란 문자를 골라 미리 이를 막기 위함”이라고 했다.⁴⁴⁾

가츠라는 이러한 데라우치의 요구에 대해 다음날 “조서건은 이미 서명이 끝났

40) 「고다마 비서관 → 시바타 서기관장(1910.8.23)」, 『1910年 韓國強占資料』, 119면.

41) 「시바타 서기관장 → 고다마 비서관(1910.8.23)」, 『1910年 韓國強占資料』, 70-71면.

42) 新城道彦, 2011 『天皇の韓國併合-王公族の創設と帝國の葛藤』, 法政大學出版局, 55면.

43) 「데라우치 통감 → 가츠라 수상(1910.8.23)」, 『1910年 韓國強占資料』, 121면.

44) 「데라우치 통감 → 가츠라 수상(1910.8.24)」, 『1910年 韓國強占資料』, 123면.

다고 하나 다시 한 번 귀결으로 미리 문자 수정할 것을 상신하고 진지하게 궁내대신과도 협의해 조서안 중 (책립하여 왕으로 함) 끝에 〈昌德宮으로 稱하고〉를 〈昌德宮 李王이라 稱함〉으로 고치고, 또 〈德壽宮이라 함〉을 〈德壽宮 李太王이라 稱함〉으로 고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⁴⁵⁾ 이로써 병합 후 한국황실 처분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가츠라는 결국 이왕을 주장하는 데라우치의 요구와 이왕은 문장상 곤란하다는 궁내성의 주장을 '창덕궁 이왕', '덕수궁 이태왕'으로 절충하는 것으로 최종 해결했다.

이와 같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주권을 갖지 않는 자가 왕위를 대대로 계승한 예가 없다"라며⁴⁶⁾ 이완용의 제의를 거부했던 데라우치는 궁내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왕 호칭을 관철시켰다. 물론 여기에는 이완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진 병합 협상 및 병합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그러면서도 데라우치가 이왕을 고집한 이유는 단지 왕이란 칭호를 쓸 때 한국황실에서 종래대로 조선왕이라 칭하고 싶은 희망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왕이란 문자를 골라 미리 이를 막기 위함이라고 했다. 즉 식민지 조선의 국호가 조선이고 왕이 조선왕이란 왕칭을 사용할 경우 식민지 조선이 대내외적으로 독립국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고 또한 식민지 조선에 통치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이것이 장차 독립의 화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데라우치는 마치 이완용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황실을 우대하는 듯하면서도 그것이 독립된 존재로 보여지는 것을 우려하여 이왕을 주장했던 것이다.

4. 왕 책립 및 황실령의 정략적 함의

1) 왕 책립과 칙사의 성격

일제는 결국 병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병합 후 한국을 조선으로 칭하고 한국

45) 「가츠라 수상 → 데라우치 통감(1910.8.25)」, 『1910年 韓國強占資料』, 74면.

46) 「朝鮮總督報告 韓國併合始末」, 『1910年 韓國強占資料』, 29면.

황실을 왕공족으로 삼아 일본의 신분제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런 결정과 관련해서 병합 후 한국과 일본 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을 책봉체제로 편입했다는 주장도 있다.⁴⁷⁾ 이에 대해서는 “책봉 체제 아래의 일반적 군주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황족에 준한다고 하는 단순히 이왕가의 연장으로 대우하려한 점을 아울러 생각하면 종래 의미의 책봉 체제라고 단순하게 비정하기는 무리일 것 같다.”는⁴⁸⁾ 비판이 있듯이 기본적으로 한국은 병합 방침대로 일본 제국의 관도에 편입된 식민지였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 독립국임을 표상하는 국호와 왕실이 존재한다는 점과 병합 후 한국이 천황의 대권에 의해 총독이 통치하는 식민지라는 사실은 형식논리상 모순된다. 이런 모순된 일본 제국과 한국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모순은 기본적으로 병합 후 식민지 조선의 위상에 대한 통감부와 일본 정부 사이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고, 그 모순의 갈등은 병합 후 왕 책립의 형식과 이왕가의 감독권 문제를 두고 일어났다. 데라우치가 한국황제의 왕 책립과 이왕가의 감독권에 대해 “우리 황제와 이왕가의 예우상 의식에 불과하지만 역시 필경 장래 정략상 관계가 적지 않”다고⁴⁹⁾ 했듯이 여기에는 식민 통치에 대한 데라우치의 정략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럼 병합 선포 후 즉시 시행되어야 할 한국황제의 왕 책립 문제를 두고 통감부와 본국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보자.

8월 18일 통감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왕칭 문제가 해결되자 이튿날 데라우치는 시바타에게 “왕의 宣下에 대해서는 특히 칙사를 보내든지 또는 총독에 위임하든지 모두 상당한 의식을 갖”⁵⁰⁾ 추고 이를 순서에 대해 빨리 수상과 궁내성이 의견을 결정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하면서⁵⁰⁾ 한국황제의 왕 책립 문제가 새롭게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바타는 수상, 궁내상과 협의한 뒤 20일 “조서에 의하여 공포한 것으로 宣下와 같은 형식은 없”라고 분명히 하면서 “병합을 공포하는 당일 관보로써 위 조

47) 吉野誠, 2002 『明治維新ト征韓論』, 明石書店, 208면.

48) 오가사와라 히로유키 지음, 앞의 책, 435면.

49) 「데라우치 통감 → 가즈라 수상(1910.8.23)」, 『1910年 韓國強占資料』, 121면.

50) 「데라우치 통감 → 시바타 서기관장(1910.8.19)」, 『1910年 韓國強占資料』, 106면.

서를 공포”하면 통감이 그 취지를 왕과 태왕에 전하고 대신 본국에서 조서 사본을 지참한 칙사를 파견하고 동시에 하사품을 전달하여 “상당히 정중한 양식을 갖”출 것이라고 회신했다.⁵¹⁾ 한 마디로 시바타는 정중한 양식을 취하겠지만 테라우치가 요구한 왕의 선하와 같은 형식은 없다고 하며 일본 왕이 한국황제를 왕으로 임명하는 공식적인 왕의 책립 형식 내지 절차에 부정적이었다. 더구나 8월 22일 시바타가 “칙사 파견 때 하사품이 있을 것”이라는 지난 방침을 “다시 의논한 결과 이번에는 하사품이 없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알려왔다.⁵²⁾

이때부터 테라우치와 일본 본국 사이에 왕 책립 문제가 쟁점이 됐다. 테라우치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츠라 수상을 상대로 직접 장문의 전보를 보내 설득했다. 8월 23일 테라우치는 왕의 선하에 상당한 예우가 필요한 것은 일본 왕의 至仁至德한 넓은 도량을 일반에게 표시하여 한국민을 그 은택에 감읍시키기 위한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한국 백성의 감정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칙사가 우리 제실의 하사품과 조서 사본을 전달하는” 정중한 형식을 채택해달라고 가츠라에게 요구했다.⁵³⁾ 이에 대해 가츠라는 25일 하사품 견을 궁내대신과 협의하여 일본풍의 물건인 卷物을 보내기로 했다고 알려왔다.⁵⁴⁾ 이어 26일에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관보에 왕 책립 조서가 공포될 예정이니 전보 도착 전이라도 당일 관보 공포시간을 적당히 가늠하여 한국황실에 통보하라고 지시했다.⁵⁵⁾ 이에 따라 테라우치는 병합이 공포된 29일 오전 11시 민병석 궁내부대신을 불러 조서 사본 2통을 교부하고 또한 칙사가 파견될 것이라고 알렸다.⁵⁶⁾

그런데 병합이 선포되기 하루 전인 8월 28일 궁내차관이 ‘칙사는 단지 일본 왕의 분부를 전하기 위한 것’일뿐이라는 전보를 보내왔다. 테라우치는 이것은 자신이

51) 「시바타 서기관장 → 테라우치 통감(1910.8.20)」, 『1910年 韓國強占資料』, 61면.

52) 「시바타 서기관장 → 테라우치 통감(1910.8.22)」, 『1910年 韓國強占資料』, 65면.

53) 「테라우치 통감 → 가츠라 수상(1910.8.23)」, 『1910年 韓國強占資料』, 121면.

54) 「가츠라 수상 → 테라우치 통감(1910.8.25)」, 『1910年 韓國強占資料』, 74면.

55) 「가츠라 수상 → 테라우치 통감(1910.8.26)」, 『1910年 韓國強占資料』, 76면.

56) 「테라우치 통감 → 가츠라 수상(1910.8.29)」, 『1910年 韓國強占資料』, 131면.

“민 궁상을 초청해 조서 사본을 교부하고 각 전하에 통고할 것을 명령한”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이왕에 대한 장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궁내대신과 협의해 빨리 회답해 달라고 가즈라에게 요청했다.⁵⁷⁾ 한 마디로 병합 선포 후 파견될 칙사는 데라우치가 요청한 ‘왕의 선하’ 내지 ‘왕 책립’ 칙사가 아니라 단지 일본 왕의 분부를 전하는 전달자일 뿐이었다. 이것은 그동안 칙사 파견 및 하사품 전달 등 ‘정중한 예우’를 강조했던 데라우치의 의도에 크게 어긋났다. 이에 대해 8월 31일 시바타는 데라우치에게 왕 책립의 건은 이미 관보에 조서를 공포한 것으로 그 형식이 끝나 “책립의식은 다시 필요치 않”고, 칙사가 조서 사본을 한국황제에게 전달하는 것은 이미 민병석 궁내부대신을 통해 조서 공포를 전하게 한 것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칙사가 ‘王冊立使가 아닌 것’에 유념”할 것을 다시 강조했다.⁵⁸⁾ 이렇듯 한때 왕 책립 건을 두고 일어났던 통감부와 본국 사이의 갈등은, 9월 1일 오전 11시 일본에서 파견한 칙사가 창덕궁에 가서 친히 조서 사본과 하사품을 전달함으로써 일단락됐다.⁵⁹⁾

이와 같이 한국황제를 왕으로 임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데라우치나 본국은 정중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그 형식과 병합 후 조서 사본을 전달할 칙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일본 정부는 조서 발표 자체로서 왕 책립의 형식과 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에 조서는 왕의 선하 형식도 아니고 이후 파견될 칙사도 ‘왕 책립 칙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데라우치와 본국 사이에 병합 후 식민지 조선과 본국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즉 본국에서 한사코 칙사가 ‘왕 책립 칙사’가 아님을 강조한 것은 곧 식민지 조선의 위상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식민지 조선과 일본 제국의 관계가 동아시아의 전통적 책봉관계가 아니며 이왕가를 독립된 존재가 아닌 황족의 예우를 받는 왕공족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었다. 반면 데라우치는 한국황

57) 「데라우치 통감 → 가즈라 수상(1910.8.29)」, 『1910年 韓國強占資料』, 132면.

58) 「시바타 서기관장 → 데라우치 통감(1910.8.31)」, 『1910年 韓國強占資料』, 85면.

59) 「데라우치 통감 → 총리대신(1910.9.1)」, 『1910年 韓國強占資料』, 132-133면.

실의 회유를 명분으로 내세워 왕 책립의 정중한 예우와 형식을 강조했는데 여기에는 데라우치의 '따로 의견'이 있었다. 그것은 이어 보게 될 병합 후 이왕가의 감독권 문제에서 짐작할 수 있다.

2) 황실령과 이왕가의 감독권

통감부는 병합 공포 직전까지 왕 책립 건 외에도 병합 후 이왕가의 감독권 문제를 두고 궁내성과 뜻을 달리했다. 1909년 7월 하순의 병합방침인 '한국황실의 처분'에서 병합 후 '대공가 및 공가에 대한 일체의 사무는 궁내대신이 관리'하기로 했었다. 또한 한국황실이 황족의 예로 대우할 왕공족으로 일본 신분제에 편입될 것이기 때문에 궁내성에서 한국의 왕공족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래서 궁내성에서는 병합 후 일본 신분제에 편입될 한국의 왕공족 관리에 필요한 황실령을 준비했다.

그런데 데라우치는 궁내성에서 마련한 황실령을 통감부로 보내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극 제시했다. 8월 17일 데라우치는 시바타에게 황실령과 관련하여 "이쪽에서는 따로 의견이 있음에 따라 궁내부는 시국해결 후 결정할" 것이고 이번에 번잡한 규정을 두는 것은 득책이 아니니 가능한 간단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궁내성 당국자에게 주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⁶⁰⁾ 그리고 20일에는 시국 해결 후 현재의 한국 궁내부 및 승녕부 직원에게는 임무취급을 명령할 예정이고 병합 후 설치될 '태공직관제안', '公族附職員官制按'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양보해 달라고 했다.⁶¹⁾ 이처럼 데라우치는 병합 후 창설될 이왕가의 감독권과 관련해서는 '따로 의견'이 있으니 이에 관한 규정은 병합 후 협의하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8월 23일 시바타가 "병합 후 왕족의 지배는 궁내성에 이관하므로 아래의 황실령을 공포하라"는 궁내성 측의 의견이 있으니 지장이 없으면 동의를 바란다고 통지해 왔다.⁶²⁾ 이때부터 황실령을 두고 데라우치와 궁내성 사이에 일시 의견충돌이 있었다.

60) 「데라우치 통감 → 시바타 서기관장(1910.8.17)」, 『1910年 韓國強占資料』, 104-105면.

61) 「데라우치 통감 → 시바타 서기관장(1910.8.20)」, 『1910年 韓國強占資料』, 108면.

이 충돌은 데라우치가 드러내지 않고 있던 이왕가의 감독권과 관련한 자신의 ‘따로 의견’에서 비롯됐다.

그럼 데라우치가 가진 ‘따로 의견’이 무엇인지 보자. 8월 25일 고다마는 데라우치의 명령에 따라 궁내성의 황실령에 대해 “왕족과 공족의 감독권에 관한 사항은 정치상 가장 중요한 안건”이므로 경솔하게 규정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선 총독이 궁내부와 승녕부 직원 전부에 대해 임무 취급을 명하고 당분간 현재대로 이를 조선 총독 감독 아래 두고 적당한 규정을 신설하는 일은 후일 궁내성과 교섭”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⁶³⁾ 시바타는 병합 후 조선 통치에 왕족 및 공족 감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간접으로 궁내성의 감독을 인정하더라도 그다지 문제 삼을 필요가 없”고 이를 위해 “궁내성과의 교섭에서도 상당한 이유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므로 상세한 이유를 통감과 의논하여 속히 알려달라고 했다.⁶⁴⁾

병합 공포일은 다가오고 병합 후 왕공족의 감독권을 규정할 황실령에 대해 궁내성과의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자 이번에는 데라우치가 직접 가츠라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8월 26일 데라우치는 황실령에 대해 한국 왕족과 공족에 대해 일종의 특별제도를 두고 세비를 국고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은 오로지 제국 황실과 이를 구별할 필요를 인정한 것인데 궁내성에서는 이를 자신들의 관할에 예속시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원래 정치적 禍亂의 원천인 구한국 황실에 대한 감독권을 직접 그곳의 통치자인 총독의 권한 안에 두지 않고 장래 완전하고 충실한 통치를 하겠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고 이런 “정치상의 이유를 도외시하고” 황실령을 발표하는 것은 결코 득책이 아니라고 했다. 대신 폐지하게 될 궁내부 직원 전부에게 임무 취급을 명하고 종전대로 총독 감독 아래 두고 필요한 때 적당한 규정을 신설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⁶⁵⁾ 데라우치는 조선 총

62) 「시바타 서기관장 → 고다마 비서관(1910.8.23)」, 『1910年 韓國強占資料』, 70면.

63) 「고다마 비서관 → 시바타 서기관장(1910.8.25)」, 『1910年 韓國強占資料』, 125면.

64) 「시바타 서기관장 → 고다마 비서관(1910.8.25)」, 『1910年 韓國強占資料』, 75면.

65) 「데라우치 통감 → 가츠라 수상(1910.8.26)」, 『1910年 韓國強占資料』, 125-126면.

독이 직접 한국 왕족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로 한국황실이 ‘정치적 화란의 원천’이라는 정치상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전제가 ‘제국 황실과 한국 공족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데라우치는 한국 왕족을 일본 황족과 구별하는 것에서 궁내성을 배제하여 왕공족의 감독권을 총독의 권내에 두려고 했다.⁶⁶⁾

이에 대해 가즈라는 우선 자신도 같은 의견이라며 데라우치의 생각에 동의를 표했다. 그리고 그는 왕족의 지배를 궁내성에 이관한다는 의미는 한국의 “왕족, 공족이 우리 황실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대체로 궁내성 관할에 속한다는 대강의 원칙에 지나지 않아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고 병합 후 왕공족에 대한 직접 감독의 직권을 통감에 위임하고 그 방법은 추후 협의하되 현 황실령은 단지 궁내부의 직원 임무 규정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⁶⁷⁾ 결국 황실령은 병합 선포를 앞두고 있다는 시일의 절박함 때문에 데라우치의 요구대로 병합 후 왕공족의 감독권을 조선 총독이 행사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황실령에는 병합 후 폐지될 대한제국 궁내부의 임무 규정만 두기로 합의됐다.

이렇게 하여 8월 27일 시바타는 데라우치와 가즈라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한 황실령을 알려왔다.⁶⁸⁾

황실령 제 호

전 한국궁내부직원으로서 조선총독께서 임무취급을 명한 자는 당분간 종전 관직의 구별에 따라 왕족 및 공족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조선 거주 왕족 및 공족에 딸린 전항의 직원은 조선총독이 이를 감독한다.

즉 궁내성에서 공포할 황실령에는 병합 후 왕족 및 공족 감독에 관한 건은 추후 협의 대상으로 남겨둔 채 조선총독이 병합 후 폐지될 궁내부의 임무 처리를 위한 사무 및 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후에도 데라우치는 가즈라에게 이 문제에 대해 경솔하게 규정을 두면 도리어 훗날 화근을 일으킬 우려가

66) 新城道彥, 앞의 책, 74면.

67) 「가즈라 수상 → 데라우치 통감(1910.8.26)」, 『1910年 韓國強占資料』, 77면.

68) 「시바타 서기관장 → 고다마 비서관(1910.8.27)」, 『1910年 韓國強占資料』, 78면.

있다고 강조했다.⁶⁹⁾ 결국 병합 후 이왕가의 감독권에 대한 데라우치의 ‘따로 의견’이란 조선총독이 이왕가를 직접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데라우치가 병합 후 조선총독이 이왕가의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내세운 주장을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그동안 한국황실이 ‘禍亂의 淵源’이었던 적폐를 근절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데라우치는 한국은 근세 아래 기강이 퇴폐하여 宮中府中 구별 없이 항상 禍亂의 淵源이 되어 통감정치 아래 이 적폐를 교정하려고 전력을 기울였지만 1907년 고종의 헤이그밀사파견처럼 궁중의 險謀秘計를 근절치 못했다고 했다. 때문에 자신은 일총 왕실의 감독을 엄하게 하여 覆束을 가하는 것은 정략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⁷⁰⁾ 즉 이왕가에 대한 직접 감독을 통해 왕족의 정치적 활동을 단절시켜 고종의 헤이그밀사파견과 같은 반일 활동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왕 책립에 대한 의식과 칙사 파견 및 하사품을 요청한 것과 같은 이유로 병합과 동시에 “우리 황실과 이왕가와의 관계를 밝히고 황실의 존엄을 훌륭하게 함과 더불어 이왕가로 하여금 정치상의 관계를 단절하고 오래오래 우리 황실의 은혜를 입히고자 함”이며 “이는 실로 황실과의 관계상뿐 아니라 조선통치상 최대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⁷¹⁾

이런 이유로 데라우치는 이왕가의 감독권이 궁내성에 속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감독권을 총독에게 위임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구체적 방법으로 조선총독이 국가에서 지급할 이왕가의 歲費의 收支, 家政의 整理 등을 직접 감독하기를 원했다. 그럴 경우 이왕가의 奸計를 단절하고 협된 비용을 막아 장래 조선통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⁷²⁾ 이에 따라 병합 후 공포된 이왕직관제는 사실상 데라우치의 의도대로 관철됐다. 1910년 12월 30일 공포된 ‘이왕직관제’

69) 「데라우치 통감 → 가츠라 수상(1910.8.27)」, 『1910年 韓國強占資料』, 128면.

70) 「朝鮮王族及公族支配ニ關スル皇室令發布件ニ對シ」, 『韓國併合ニ關スル書類』.

71) 「데라우치 통감 → 가츠라 수상(1910.8.29)」, 『1910年 韓國強占資料』, 132면.

72) 주) 70과 같음.

(황실령 제34호) 제1조에 “이왕직은 궁내대신의 관리에 속한다.”라고 규정했으나⁷³⁾ 이날 함께 공포된 ‘조선에서 이왕직의 사무 및 조선에 근무하는 이왕직 직원에 관한 건’(황실령 제39호) 제1조에서 조선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독의 감독아래 둔다고⁷⁴⁾ 하여 이왕직은 명목상 궁내대신이 관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총독의 관할이었다. 그리고 ‘이왕직 경비의 지출과 이왕세비의 수지감독에 관한 건’(황실령 제40호)에서 이왕의 세비 수지는 조선 총독이 감독하고 예산과 결산은 조선 총독의 심사를 거친 후 궁내대신이 인가하도록 규정했다.⁷⁵⁾ 이를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데라우치의 뜻대로 병합 후 이왕직의 사무와 직원은 조선총독의 감독을 받게 되어 이왕직은 실질적으로 일본 궁내성이 아니라 조선총독의 관할 아래 있게 됐다.⁷⁶⁾

이와 같이 데라우치가 병합 후 이왕가의 감독권을 조선총독 아래 두고자 한 목적은 효과적인 식민 통치와 이왕가에 대한 궁내성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데 있었다. 이것은 데라우치가 병합 전 조선총독부관제를 구상하면서 “본국 내각으로부터 조선총독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려”한 의도와⁷⁷⁾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데라우치는 이를 통해 조선총독이 본국 내각뿐만 아니라 궁내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식민 통치의 원형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일제가 병합 후 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선택한 것이 장래의 적극적 대륙정책을 지향한다는 지적이 있듯이⁷⁸⁾ 조선총독이 조선총독부와 함께 이왕가 등 식민지 조선의 상부 구조를 장악하려는 의도는 병합을 주도한 일본 육군의 대륙침략 정책과도 연관성이 있었다. 사실 왕 책립 및 이왕가의 감독권

73) 「皇室令 第4號 李王職官制(1910.12.30.)」, 『朝鮮總督府官報』 제106호(1911.1.9).

74) 「皇室令 第39號 조선에서 이왕직의 사무 및 조선에 근무하는 이왕직 직원에 관한 건 (1910.12.30.), 『朝鮮總督府官報』 제106호(1911.1.9).

75) 「皇室令 第40號 이왕직 경비의 지출과 이왕세비의 수지 감독에 관한 건(1910.12.30.), 『朝鮮總督府官報』 제106호(1911.1.9).

76) 이윤상, 2007 「일제하 '조선왕실'의 지위와 이왕직의 기능」, 『한국문화』 40, 326면.

77) 윤대원, 앞의 논문, 324면.

78) 오가사와라 히로유키, 앞의 책, 439면.

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데라우치 그리고 데라우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궁내성을 설득하여 관철시킨 가츠라 모두 대륙침략을 위해 한국의 ‘즉시 병합’을 강력히 추진했던 일본 육군성의 핵심적 인물이었다. 병합 당시 일본 육군성에게 한국은 식민 경영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만주의 후배지라는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지녔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은 “육군의 대륙정책 수행의 중요 거점으로 간주되었다.”⁷⁹⁾ 따라서 병합 후 식민지 조선에 비록 형식적이지만 국호와 왕실이 존재하는 독특한 식민지가 성립했지만 그것은 식민지 조선을 본국에서 정치적으로 독립 시켜 조선을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활용하려던 일본 육군의 대륙침략 정책이 반영된 결과였다.

5. 맷음말

이상으로 1910년 8월 29일 병합 선포에 이르기까지 일제가 병합 후 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칭하고 한국황실을 왕공족으로 삼는 과정을 고찰했다.

일본은 한국병합을 준비하면서 1910년 7월 8일 내각회의에서 병합 후 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하고 한국황실을 공족으로 삼아 일본신분제에 편입시킨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 방침은 데라우치가 제3대 통감으로 부임한 뒤인 8월 16일 이완용과 가진 비밀 회담에서 변경됐다. 이 회담에서 이완용은 병합의 조건으로 국호 한국과 왕칭의 유지를 요구했다. 이완용은 이를 통해 병합을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책봉관계로 치환하여 한국민의 상하를 설득시킬 명분을 얻고자 했다. 한편 데라우치는 ‘적당한 시기’에 실시하려던 병합이 예상치 못하게 빨리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본국과 협의하여 이완용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병합 후 한국은 조선으로 칭하고 한국황실은 왕공족으로 삼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됐다. 데라

79) 松田利彥, 2003 「日本陸軍의 中國大陸侵略政策과 朝鮮-1910-1915年」, 『한국문화』 31, 251면.

우치가 국호를 한국이 아닌 조선을 주장한 것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사대의 상징으로 폐기한 조선이란 국호를 사용함으로써 한국민에게 대외적 종속성과 열등의식을 훈기시켜 병합을 합리화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병합 후 한국은 일본 제국 관도의 일부로 편입될 식민지였기 때문에 조선이란 국호는 실제 고유명사가 아니라 식민지의 지리적 위치를 뜻하는 지역명일 뿐이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국호와 왕칭 문제가 일단 해결됐으나 병합 후 왕을 李王으로 칭하는 문제, 그리고 왕의 책립 형식과 이왕가 감독권 문제로 통감부와 일본 정부, 직접적으로는 데라우치와 궁내성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데라우치는 병합 후 왕을 '이왕'으로 칭하고 왕 책립에도 정중한 예우와 함께 왕 책립의 성격을 떤 칙사의 과정을 요구했고 이왕가의 감독권도 조선총독 아래 둘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일본 정부 내지 궁내성은 한국은 식민지이고 이왕가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일본 황족의 예를 받는 왕공족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데라우치의 요구에 반대하며 8월 29일 조서 공포로 왕 책립 절차가 완료되고 이후 본국에서 과정을 칙사는 단지 조서 사본 전달자일 뿐이며 '왕 책립 칙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데라우치는 병합에 대한 회유책으로 일본 왕의 지인자덕한 넓은 도량을 한국민에게 표하여 그들을 감읍시킬 필요가 있고, 특히 근세 아래 한국황실은 禍亂의 源流이었기 때문에 한국황실이 장차 독립의 근원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이왕의 호칭과 왕 책립 형식 그리고 조선총독의 직접적인 이왕가 감독이 필요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문제는 순종을 창덕궁 이왕으로 칭하고, 이왕가의 감독권에 대한 궁내성의 당위성을 인정하되 조선총독에게 감독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해결돼 결국 데라우치의 요구가 거의 관철됐다.

병합 후 한국의 국호 및 왕칭에 대한 통감부와 본국의 이러한 의견 대립은 식민지 조선과 일본 제국과의 관계 즉 식민지 조선의 위상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 데라우치가 병합 후 이왕가의 감독권을 규정할 황실령에 대해 '따로 의견'이 있다고 했듯이 그것은 조선총독이 직접 이왕가를 감독하는 것이었고 그 목적은 병합 후 이왕가에 대한 궁내성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데 있었다. 이것은 본국 내각

으로부터 조선총독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려한 의도와 같은 맥락이었다. 이 때문에 병합 후에도 식민지 조선에는 식민지이면서도 비록 형식적이지만 독립을 표상하는 국호와 왕실이 존재하는 독특한 식민 통치의 한 원형이 마련됐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식민지 조선을 본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활용하려던 일본 육군의 대륙침략 정책이 자리하고 있었다.

논문투고일(2017. 5. 22), 심사일(2017. 5. 24), 게재확정일(2017. 6. 7)

참고문헌

- 『朝鮮總督府官報』 제106호.
- 『韓國併合ニ關する書類』(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 Ref.A03023677100).
- 「朝鮮總督報告 韓國併合始末」(李鍾學 編著, 2000 『1910年 韓國強占資料』, 史芸研究所).
- 「韓國併合ニ關する書類 · 着電」(李鍾學 編著, 2000 『1910年 韓國強占資料』, 史芸研究所).
- 「韓國併合ニ關する書類 · 發電」(李鍾學 編著, 2000 『1910年 韓國強占資料』, 史芸研究所).
- 日本外務省 編纂, 1961 『日本外交文書』 제43권 제1책, 巖南堂書店.
- 日本外務省 編, 1965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原書房.
- 日本外務省 編, 1966 『小村外交史』, 原書房.
- 국사편찬위원회, 1998 『統監府文書』 2.
- 이윤상, 2007 「일제하 '조선왕실'의 지위와 이왕직의 기능」, 『한국문화』 4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윤대원, 2015 「일제의 한국병합 방법과 식민 통치 방침」, 『한국문화』 7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李王茂, 2016 「대한제국 황실의 분해와 王公族의 탄생」, 『한국사학보』 64, 고려사학회.
- 윤대원, 2011 『데라우치 마사다케 통감의 강제병합공작과 '한일병합'의 불법성』, 소명 출판.
- 小松祿, 1902 『朝鮮併合之裏面』, 中外新論社.
- _____, 1927 『明治史實外交秘話』, 中外商業申報社.
- 倉知鐵吉氏 述, 1939 『韓國併合の經緯』.
- 松田利彦, 2003 「日本陸軍의 中國大陸侵略政策과 朝鮮-1910-1915年」, 『한국문화』 3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吉野誠, 2002 『明治維新ト征韓論』, 明石書店.
- 新城道彦, 2011 『天皇の韓國併合-王公族の創設と帝國の葛藤』, 法政大學出版局.
- 오가사와라 히로유키(최덕수 · 박한민 옮김), 2012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병합구상과 조선사회』, 열린책들.

Abstract

Japanese imperialism's Korea Annexation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Daehan Emperial disposal

Yun, Dae-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background of the conflict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Residency-General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solution about the name of Korea and King after the annexation.

Japan decided on July 8, 1910, at the Cabinet meeting, to treat the name of Korea as Chosun and Royal-Family of Daehan Empire as an the King and princes group after the annexation. On August 16, at a secret meeting between Terauchi(寺内正毅) and Lee Wanyong(李完用), Lee Wanyong agreed with the annexation and maintained the name of Korea and king as conditions. Japan decided to accept the offer of Lee Wanyong in order to not miss the opportunity of annexation. Thus Japan decided to take the name of Korea as Chosun and Royal-Family of Daehan Empire as the royal family.

However, there was a conflict between Terauchi and Lee Wanyong about the form to appoint the Korean Emperor as king, the character of Royal envoy to dispatch from Japan, and the issue of right of Yi Royal-Family(이왕가) supervision after the annexation. In the background of this conflict, there was a political implications of Terauchi, that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governed Yi Royal-Family directly for political independence from Japan government. For this reason, after the annexation, Korea became a unique colony where the name of country and the royal family representing the independence exist.

Key words : Royal-Family of Daehan Empire(한국황실), the name of country, King and princes group, Royal envoy, the right of Yi Royal-Family(이왕가) supervision, Royal order, continental aggression policy